

제 1729 호  
1993. 3. 18.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 원 증  
편집인 : 공 도 관 이 상 진  
전 화 : 731-6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 시 보

차

200  
110

● 조 령

- 제 2985 호 서울특별시출판및비디오물관리·표의업자등등의관한수요징수조례 ... 2
- 제 2986 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개정조례 ..... 2
- 제 2987 호 서울특별시현강공원사면디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 ..... 3
- 제 2988 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 ..... 3
- 제 2989 호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조례개정조례 ..... 4
- 제 2990 호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 ..... 4
- 제 2991 호 서울특별시상주인구조사시행조례폐지조례 ..... 4
- 제 2992 호 서울특별시새마을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 ..... 5

공					200				
람					110				

1. 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전통을 소중하게 서울을 아름답게”

1213

#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읍  
면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  
수료징수조례를 다음 공포한다.

1993. 3. 18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 ●서울특별시조례제2985호

서울특별시읍면및비디오물판매·대여  
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및비디오물의  
판매업자등록(이하 "업"이라 한다) 및  
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료 징수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읍면판매업자, 비디오물판매  
업자 또는 비디오물대여업자 등록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판매업  
자, 비디오물판매업자 또는 비디오물대  
여업자의 등록신청 : 2,000원
2.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판매업  
자, 비디오물판매업자 또는 비디오물대  
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1,000원
3.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판  
매업자, 비디오물판매업자 또는 비디오  
물대여업자의 등록증 재교부신청 : 1,000  
원

제3조(납부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  
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시 당해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정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폐기조례) 서울특별시읍면판매업자등록  
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상  
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3. 18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 ●서울특별시조례제2986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  
개정조례

제1조(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  
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공업기정 또는 지방  
시설기정"을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  
설서기관"으로 하고, "지방전기과·지방  
기계과·지방화공과 또는 지방수도토목  
기과"를 "지방전기사무관·지방기계사무  
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수도토목사  
무관으로"로 하며, "지방시설부기감·지방공  
업부기감"을 "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공업  
부이사관"으로 하고, "지방기계사무관"을  
"지방기계사무관으로"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의 개  
정)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의무부기감"을 "지  
방의무부이사관"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설치조례 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기계과 또는 지방  
화공기과"를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  
화공사무관으로"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토목기과로"를 "지방토목 사무관으로"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시설기정"을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시설부기과·지방공업부기과"를 "지방시설부서기관·지방공업부서기관"으로 하고, "지방기계과"를 "지방화공기과"로,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기계기과로"를 "지방기계사무관으로"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시설기정·지방공업기정·지방환경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을 "지방시설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하고, "지방토목기과·지방기계기과·지방전기기과·지방화공기과·지방환경기과 또는 지방보건기과로"를 "지방토목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3. 18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87호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차시설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상이용시설"을 각각 "이용시설"로 한다.

제4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차시설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3. 18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88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중 남산공원 전망대입장권의 "어른 1회당 1,200"을 "어른 1회당 1,600"으로, "청소년 1회당 800"을 "청소년 1회당 1,000"으로, "어린이 1회당 800"을 "어린이 1회당 1,000"으로 하고, 미고란의 "부가가치세 별도"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치규칙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3. 16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89호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 각항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00인 이내"를 "120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단서 중 "인 이내"를 "120인 이내"로 한다.

제8조 중 "건축기술을 포함한 전문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를 "건축기술, 향의 규정외의 관련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당 및 여비)"를 "(수당 및 여비 등)"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3. 18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90호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를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목의 개정) 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의 표종목란 중 20, 22 내지 30, 32 내지 36, 38, 39, 41 내지 43, 46, 47, 64의 수검기관란 중 "구청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청장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을 "구청장"으로, "구청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행정차관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이 행한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는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자동차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구청을,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상주연구조사시행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3. 18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91호

서울특별시상주연구조사시행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상주연구조사시행조례는 이를

제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3. 18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제2992호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자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회관의 자체공연 및 행사에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어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본시설 : 대강장·소강당·대회의장·소회의장 및 전시장
- 2. 부속설비 : 피아노·라이프오트간·동시통역시설·조명시설·무대시설·의상·대소도구·음향시설·영상기 촬영·이동스크린·중계방송 및 냉난방 등

제3조(사용승인) 회관의 대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장(이하 "회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권 내용은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4조(대관심사위원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회관 내에 대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시간) ① 회관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 1. 오전 07:00부터 12:00까지
- 2. 오후 12:30부터 17:30까지
- 3. 야간 18:00부터 23:00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시장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 등)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 구분에 따라 발표와 같이 정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권의 발행) ①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회관장이 정한 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한다.

② 입장권을 좌석수 이상으로 발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회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입장권 발행을 정략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발행한 입장권은 회관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입장권의 재표·수표관리) ① 영회상영을 위한 대관 및 회관자체 공연에 대한 재표 및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입장권의 예매를 정략할 수 있다.

② 영회 이외의 대관공연의 경우 입장권의

표준 사용자 책임으로 할당 수표는 회  
계적 건립하되 사용자에 대한 회계의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대표수수표는 인영인 표시방법의 100원  
의 10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용도, 대표수수표의 인  
장권 대표방법 및 수액 수하고 정산 처리한  
다.

⑤ 대관장면시 사용목적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는 회관장(회관장)을 적외한 복수의  
100원의 2배 해당하는 부속의 인영인  
표시방법을 1인 부속의 수액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환급) ① 회관장을 회관장  
을 목적으로 대관할 때에는 정외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세관, 수수료 및 관세비용  
기름을 공제할 등해 전담수입 총액의  
100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의 규정  
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정수한다.

② 회관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  
을 얻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6항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  
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계약제지를 신  
경하여 회관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유지 또는 군사안보를 위한  
수요가 있을 때
2. 회관시설 내의 범죄를 예방할 수단이  
있을 때
3. 장식, 집회와 행사
4.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정지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회관장은 그 배  
상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항 또는 이 조항의 의한 규칙이  
다지 않을 위반한 때
2. 조항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목적용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  
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5.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견된 때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  
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위반하  
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  
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  
은 사용자는 회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  
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  
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  
정부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액 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공서로부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입장제한) 보관장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즉각 사용자외의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할 수 있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관람자
3. 만일연속 관람을 부끄러워 하는 관람자 및 동행자를 동반한 자
4. 보관의 질이 있을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보관장이 양호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사용승인액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액 외의 사용자승인권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승인권 것으로 본다.
- ③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액 외의 사용자승인권이나 사용자승인권 가맹시 이 조례 시행일 후 사용자승인자는 이 조례의 규정액 외의 사용자승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시공공시설제공문화회관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명	구분	사용 목적	사용료 (기준액)	비 고
강	대강당	공연	203원	1. 좌석당 1회 단가임. 2. 오전은 기준액의 100분의 55, 오후는 기준액의 100분의 75, 야간은 기준액으로 함. 3.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함. 4.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5. 익일의 공연을 위한 야간(철야 포함) 작업시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소강당	공연	241원	
강	대강당	행사	285원	
	소강당	행사	526원	
회의장	대회의장	행사	1111원	
	소회의장	행사	164원	1. 평방미터당 단가임(평당 541원 기준). 2. 오전 및 오후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전시장	전시	전시	275원	1일 평방미터당 단가임(평당 907원 기준).

※ 초과사용료 가산(계속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을 제외)  
 ○ 2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6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표 사용료 전액

2. 부속설비사용료				
가. 부속설비				
시설명	구분	단위	사용료 (기준액)	비 고
과 아 노	대 형	1회	33,000원	1. 오전·오후·야간 대관 중 1회 사용료임. 2. 동시동역시설 사용시는 수신기 1대당 500원의을 별도 징수함. 3. 동시동역시설(수신기 포함)을 1일 2회 이상 사용 승인시는 1회 초과분에 대하여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할인함(사전승인 없이 초과 사용시는 기본 시설의 초과 사용료 가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4. 라이프프르간 1회는 연습(2회) 포함.
	중 형	1회	11,000원	
	소 형	1회	5,500원	
라이프프르간		1회	220,000원	
동 시 동 역 시 설	대 강 당 식		220,000원	
	소 강 당 식		110,000원	
	대표의장 식		220,000원	
	소대표의장 식		110,000원	
나. 기타시설				
사용목적 및 이용시설	구분	단위	사용료 (기준액)	비 고
활 영	대강당영화	4시간	110,000	1.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2. 영화촬영의 경우 단위 시간초과 1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으로 함. 3. 무료입장행사 및 순수음악 연주 시의 조명시설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4.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5. 할부제 적용시는 제외함.
	소강당영화	4시간	55,000	
	대·소회의장 영화	4시간	55,000	
	대강당 VTR	1회	30,000	
	소강당 VTR	1회	20,000	
	대·소회의장·전시장 VTR	1회	20,000	
무대 조명	대 강 당	1시간	33,000	
	소 강 당	1시간	11,000	
무 대	오케스트라 비트	1회 공연당	22,000	
	회전무대	1회	22,000	
	슬라이딩 무대	1회	22,000	
음 향	대강당	1회	22,000	
	반사관	소강당	1회	11,000
음 향	녹 음	1회	11,000	



사용목적 및 이용시설		구분	단위	사용료 (기준액)	비 고
정 사 기	70m/m		1회	33,000	
	35m/m		1회	22,000	
	19m/m		1회	11,000	
이 동 스 크 린			1회	50,000	
중 계 방 송			1회	110,000	
의 상 및 락·소도구			1회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방 관 방	방 방		1시간	연료시가에 따라 결정	1. 사용기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사용료=사용연료×연 료요금×0.4).
	관 방		1시간		